사무위임 전결 규정

-목 차-

حال الح	ㅁᄀ	100
제1조		183
제2조	적용범위	
제3조	위임전결 원칙	
제4조	전결사항	
제5조	전결처리의 예외	
제6조	전결의 책임과 권한	
제7조	협의	
제8조	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	
제9조	위임전결 시항에 대한 감독	
	부 칙	184
① (A) i	행일)	
② (경3	과조치)	

사무위임 전결 규정

2005. 06. 13 제정, 2011. 09. 06 개정 2012. 10. 30 개정, 2015. 11. 09 개정 2018. 02. 28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ECO융합섬유연구원(이하 "연구원" 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사무위임 전결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위임전결 원칙) 원장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, 실장, 담당자(이하 "전결권자"라고 한다)에게 위임 전결토록 한다.
- 제4조(전결사항) ①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사항은 "별표"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 다만,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(R&D)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.〈개정 12.10.30〉
 - 1. 계약업무규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호에 대하여 부서 장이 다음과 같이 전결 할 수 있다.<\d\delul_2.10.30, 18.02.28>

업무명	단 위 사 무 명
예산품의	- 500만원 이하의 제조,용역,공사,물건구입 - 50만원 이하의 연구활동비(이하 "업무추진비" 이라 한다)

- 2. 행정지원실 재정담당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품의금액 이상은 그러하지 않는다.</br>

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전결권 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- 제5조(전결처리의 예외) ①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②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③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전결의 책임과 권한)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- 제7조(협의)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차상위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제8조(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) 전결권자의 부재 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제9조(위임전결 사항에 대한 감독) 원장은 수임 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부 칙

(2005.06.13), (2011.09.06), (2012.10.30), (2015.11.09), (2018.02.28.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	위임전결사항(제4조관련) 				
	단 위 사 무 명		전결구분		
업 무 명			원장	이사	
기본계획 및 방침수립시행	 연구원「정관」제4조 사업의 기본정책 및 방침의 결정 사업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통보, 조회, 공고 등 일반적인 사항 	0	0	0	
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	1. 이사회 운영 가. 이사회소집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나. 의안결정, 의결사항 및 방침에 대한 처리 다. 기타 이사회운영 일반사항		0	0	
	2. 위원회(운영, 인사 등의 위원회) 운영 가. 운영계획수립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나. 기타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		0		
규정 및 내규	1. 정관,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. 규칙의 제정 및 개폐		0	0	
인사복무후생	1. 임직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가. 직원의 임용(신규채용) 나. 직원의 보직, 겸임, 직위해제, 정직, 면직, 휴직 등 다.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라. 직원 승진 임용 마. 직원 전보, 휴직, 복직 바.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사. 신원조사 아. 근무, 경력평정	0	0 0 0 0		
	자. 인사관계 제증명 차. 일용 인부 임용	0	0		
	2. 인사위원회 운영 3. 근무상황관리(결근, 휴가, 병가, 초과근무, 특별근무,		0		
	휴일근무, 휴가, 병가 등) 가. 실장 나. 직원	0	0		
	4. 국내 출장명령 및 복명 가. 실장 나. 직원	0	0		

		전결구분				
업 무 명	단 위 사 무 명	실장	원장	이사장		
인사복무후생	5. 해외출장명령 및 복명 가. 원장 나. 직원 6. 비상근무 명령 7. 직원의 업무분장 8. 직원의 수강 및 출강 9. 직원의 국내외 연수 10. 복리후생 가. 국민연금, 의료보험에 관한사항 나. 건강관리 및 후생시설관리	0	0 0 0 0	0		
예산 및 결산	1. 예산편성방침 결정 2. 예산안 작성 3. 추가경정예산안 4. 승인예산의 통지 5. 실행예산 편성 6. 예산의 전용 7. 예산의 이월 8. 예비비 사용 9. 자금수급계획 10. 결산보고서 승인 11. 결산보고서 작성		0 0 0 0 0	0		
예산집행품의	1. 제조·용역 및 공사 2. 물건의 구입		0			

				전결구분		
업무명	단 위 사 무 명		원장	이사장		
예산집행품의	3. 급여 등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집행 4.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5. 업무추진비, 부서운영비 6. 각종 회계장부 정리	0 0 0				
자금운용 및 수입금관리	1. 각종 수익사업운영계획 수립 2. 자금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3. 수입금 관리 및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4. 현금예금,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. 이용료, 임대료, 사용료 등 기타수입금의 조정, 징수 및 취소 결정 6. 과오납금의 반환 7. 관련 장부정리	0	0 0 0 0 0			
재산 및 물품	1. 물품 수급계획 및 통제 2.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3. 재물조사 4. 비품, 소모품, 사무용품 출급 5. 시설물의 사용, 이용, 임대 기타 부대사업허가 등 6. 차량 및 시설물관리, 시설물안전진단 등 7. 자산재평가 및 보고 8.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	0 0	0 0	0		
기업지원	1.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2. 창업보육실운영 3. 자체수익사업 아이템 개발 운영 4. 대학·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운영 5. 기업 경쟁력 조사 및 연구지원 6.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개발 운영 7. 시험생산제품 판로개척 8. 기타 기업 지원업무 가. 중요한 사항 나. 경미한 사항	0	0 0 0 0 0 0			

		전결구분			
업 무 명	단 위 사 무 명		실 장	원 장	이 사 장
연구개발(R&D)사업	○ 위임전결규정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		0		
기 타	1. 소송업무 2. 보안업무 및 관리 3. 직인관리 4. 문서수발 및 조정 통제 5. 의전 및 각종 행사 6. 문서고 및 도서관리 7. 감사업무 8. 제반 지시사항 처리 9.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.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11. 회의관리 및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		000000000	0	